

광주지방법원 2024. 6. 7 선고 2023나7545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4. 6. 7 선고 2023나75453 판결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. 3. 23 선고 2022가단50572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 어촌계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

변론 종결 2024. 5. 17.

판결 선고 2024. 6. 7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. 3. 23. 선고 2022가단50572 판결

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에 2021. 8. 24.

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국 2021. 8. 31. 접수 제253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에 2021. 9. 30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국 2021. 9. 30. 접수 제297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, 제1심판결 제2쪽 12행의 '피고'를 '원고'로, 제4쪽 9행 '피고'를 '피고(이 사건 원고)'로, 제4쪽 11행 '피고'를 '피고(이 사건 원고)'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원고는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)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박병태

판사이화진

판사김다운

별지